

경조금지급규정

개 정	:	2003. 10. 1
개 정	:	2005. 7. 20
개 정	:	2013. 3. 1
개 정	:	2020. 9. 24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이 대학교 교직원의 경조사 또는 재해발생시 경조금 및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급대상) 이 대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.

제3조(지급의 구분) 경조금 및 위로금의 지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1. 결혼축의금
2. 수연축의금
3. 조의금
4. 재해위로금
5. 기타

제4조(지급기준) 경조금 지급내역은 별표와 같다.

제5조(지급방법) ①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유족에게 지급되는 경우 유족의 범위 및 지급순위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. <개정 2020. 09. 24.>

제6조(지급절차) ① 제3조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교직원 본인 또는 소속 부서 교직원이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경영지원팀에 제출한다.

② 경영지원팀은 지급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정에 따라 7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지급제한) ① 수연(회갑, 칠순, 팔순, 등) 중 개인별 1회로 제한한다.

② 본인, 배우자, 직계존비속이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대상별 연 1회만 지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(별표)

경 조 금 지 급 내 역

(단위 : 원)

구 분		금 액	지 급 조 건
결 혼	본 인	200,000	1. 법률혼에 한함 2. 결혼을 이유로 퇴직한 사람이 2개월내에 결혼할 경우에는 정액을 지급함
	자 녀	100,000	
수 연	본인 및 배우자	200,000	수연(회갑, 칠순, 팔순 등) 중 개인별 1회에 한 함.
	부 모 (본인 및 배우자)	200,000	
조 의	본 인	500,000	
	배 우 자	300,000	
	부 모 (본인 및 배우자)	200,000	
	자 녀	100,000	
재 해	반과 이상	300,000	재해는 풍수해, 화재, 천재지변 등을 말함
기 타	화 한 (120,000원 상 당)		본인, 배우자, 직계존비속의 사망
	화 분 (60,000원 상 당)		본인, 배우자, 직계존비속이 3일 이상 입원 진료할때